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검증권한 신설 등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90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검증권한 신설 등(안 제39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2025. 1. 7.

다. 회 부 일: 2025.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의 흥행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고,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하지만 최근 영화입장권 결제 금액과 전송된 통합전송망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검증 업무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검증 결과 자료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사례를 적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

Ⅲ. 검토의견

1.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검증권한 신설 등(안 제39조)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명령,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9조제4항).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 통합전산망 검증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9조제5항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전산망에 전송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1. <u>업무에 관한 보고명령</u>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4. 그 밖에 통합전산망에 전송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영화진흥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제3항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범죄협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 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 -----.
---	-----------------------------------

다.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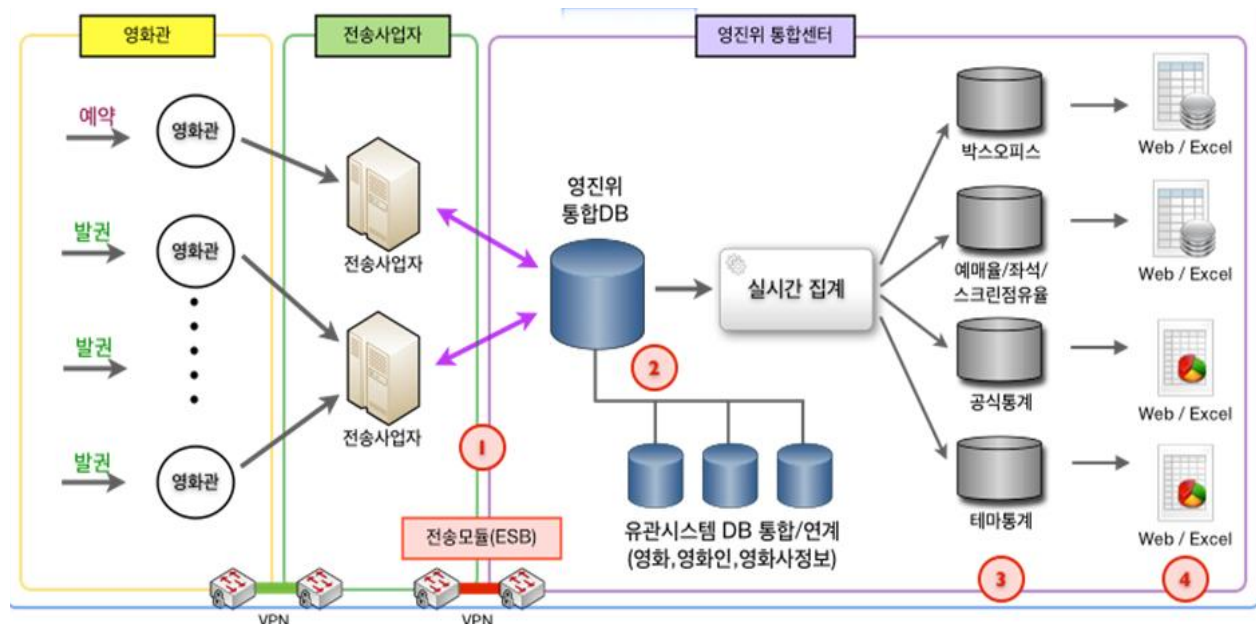
○ 현행법 제39조¹⁾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 공중이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이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입장객 수 및 입장권 판매액 등을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전송하여야 함.

- 이는 전국 영화관의 입장권 발권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계·처리하여 신속한 박스오피스 정보와 다양한 영화산업 통계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영화시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영화산업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림 1]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개요

- (운영목적) 한국 영화관 발권정보 실시간 집계처리 및 각종 박스오피스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한국영화산업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
- (법적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 (운영기간/운영주체) 2004년~ / 영화진흥위원회
- (제공자료) 일별, 주간/주말, 월별, 연도별 박스오피스 및 예매정보 등 각종 통계정보, 영화/영화사/영화인 DB 제공 (www.kobis.or.kr)
- (운영성과) △신속한 영화산업 통계정보 확보 △영화산업 유통구조 투명성 제고 △박스오피스/영화/영화사/영화인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등
- (예산) (2021년) 2,152백만원 (2022년) 1,847백만원 (2023년) 1,825백만원 (2024년) 1,719백만원, (2025년) 1,707백만원



* 통합전송망 전송자료 : 영화상영관 명칭, 영화 제목, 상영기간, 상영등급, 영화 제작자의 국적, 영화 관람요금, 입장권 판매액, 입장객 수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그러나 최근 입장권 발권정보 등을 부풀려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 실제 결제 금액과 통합전산망에 전송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음.²⁾ 통합전산망을 통해 공개되는

입장객 순위 등은 영화 흥행의 척도이자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허위자료 전송은 관객을 기만하고 영화시장 질서를 왜곡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영화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불공정행위라 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통합전산망에 전송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및 자료 제출명령과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통해 관객 수 왜곡 등 영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통합전산망 자료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의 공정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관련 업계의 신중검토 필요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한국상영발전협회**에서는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권한 부여이며,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해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영화**

2) 연합뉴스, ““전석 매진” 영화 323편 관객수 조작…69명 무더기 송치”, 2023.8.16. 기사 참조

관산업협회에서는 현재도 통합전산망을 통해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이나 현장출입 등 민간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는 업계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롯데컬처웍스나 CGV, 메가박스과 같은 민간업계에서도 영업의 자유 침해, 관련 산업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³⁾ 개정안 심사 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6

3) 관련 협회, 민간업계 등 의견은 [참고1] 자료 참조

참고1

협회, 민간업계 등 의견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독립영화 협회	• 동의
한국영화 프로듀서조합	• 의견 없음
한국상영발전 협회	• 신중검토 요청 - 영진위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은 과도한 권한 부여 및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해 영업상 자유침해가 야기될 수 있음
한국영화관 산업협회	• 신중검토 요청 - 현재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경우 영화상영관별 관객수, 매출, 예매율, 좌석점유율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음. 또한 이를 통해 배급사와 부율에 따른 정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여짐. - 추가적인 자료를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현장출입 등 조사를 진행한다면 현재의 경영상의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 및 사법심사 등의 법적제도 등과 중복되는 이중규제라고 보여지며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사항등이 발생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또한 민간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는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공정 경쟁을 저해시킬 수 있는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더욱이 영화업계의 경우 공정한 산업환경을 위해 문체부를 중심으로 영진위와 공동으로 산업의 표준계약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점과 필요시 산업내의 협의체가 운영되는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산업에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 주요내용
롯데컬처웍스	• 신중검토 - 개정안에 명시된 자료제출, 현장출입 등 조사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사익을 크게 제한할 소지가 있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않는 영화 업계에 대한 규제 조항 신설시 산업 위축이 우려되며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바임.
CGV	• 신중검토 - 입장권 금액과 통합전산망 금액의 불일치 사례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이후 법 개정 등 규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통합전산망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영화산업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자체 구축한 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규정'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별도의 법 규제를 통해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할 실효성이 미미함 -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기능과 임무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신설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 채취 등의 행정조사 권한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영진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넘는 과도한 권한으로 사료됨 - 또한 자료(데이터)의 정확성 검토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절차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 시기 역시 수시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등 최소한의 방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영업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 - 더불어 현재 영비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전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과태료 사안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 부여는 다른 법 체계와의 균형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임
메가박스	• 신중검토 - 통합전산망을 통해 영화상영관의 관객수, 매출, 예매율, 좌석 점유율등을 빠짐없이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고 있기에 고의적 누락이나 조작이 불가하며, 전송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음 - 개정안에 명시된 자료 검증을 위한 과정을 통해 자칫 기업의 고유한 영업권이 크게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19년 대비 아직까지 영화관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예 의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예상되며 개정예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